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 15. 김문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1. 1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2.18.)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3.12.) :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6.3.17.) :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3.24.)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문수의원)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노동시장 내 직무 대체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개인의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나아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평생교육사는 전 생애에 걸친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인력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학습자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평생교육사들의 연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의 미승인 및 연수 참여로 인한 불이익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제재처분을 해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평생교육의 범위가 진로교육 등으로 확대되면서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평생교육사가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 및 교육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에 대한 보수(補修)교육을 명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등”에는 현행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8조의 평생교육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공영역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교육의 대상을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평생교육사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하여 보수교육의 대상을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배치 및 채용하는 평생교육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을 운영할 위탁기관을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정책 대

응을 위해서는 이를 교육부령으로 수정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한 사례로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등도 소관 부처령으로 보수교육 및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인정하고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대안반영 폐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